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측 원칙인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 확대(안 제39조)
일반적인 도시철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험운전, 사고로 인한 단선운전 및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7. ~ 11. 16.)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량을 결합·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운전방향) ① (생 략)	제39조(운전방향)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②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차량을 결합 · 해체하거나 차 선을 바꾸는 경우</u>
<u><신 설></u>	<u>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u>
<u><신 설></u>	<u>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u>
<u><신 설></u>	<u>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 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 을 하는 경우</u>
<u><신 설></u>	<u>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4133